
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2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0.

발 의 자 : 곽규택 · 조승환 · 박지원
김용태 · 유상범 · 신성범
김상훈 · 강대식 · 강승규
배준영 · 조지연 · 강명구
서천호 · 최은석 · 서범수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구감소지역의 경우,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응급 및 공공보건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.

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기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,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.

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3항 신설).
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운영비 및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3분의 2 이내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지방 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 조금은 3분의 2 이내로 한다.</u>